

[사 건 명] 행심 2014-20

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

청구인 : ○○○

피청구인 : ○○고등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[청구취지] 2014.10.28.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『부존재』 결정을 취소한다.

[재결이유]

I. 사건개요

- 가. 2014.10.20.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‘2010년 6월 ○○과 ●●’ 라는 제목의 글을 2012년 ◇◇교도소에서 ◆◆군 11개 읍·면장, 각 마을 이장, 부녀회장에게 발송하고, ◇◇교도소 출소 후 ◆◆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내부사례 내역서(이하 ‘이 사건 정보’라 한다)의 공개를 청구하였고, 피청구인은 2014.10.28.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를 하였다.
- 나. 청구인은 2014.11. 3.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.

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- 청구인이 ◇◇교도소 수용 중에 8개 항목으로 ◆◆군수 ♣♣♣에게 진정하였으나 ◆◆군수 ♣♣♣이 아무런 답변이 없어 ◆◆군 전체 마을 이장, 부녀회장, 11개 읍면조합장에게 진정을 하였으니 ■■■고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사실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정보부존재 통보를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.

Ⅲ. 피청구인의 주장

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-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◇◇교도소에 특채된 이유를 알 수 없으며,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부내역서는 정보가 부존재 하므로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를 한 것이며, 2014.10.28. 피청구인의 정보결정 통지(청구 내역 부존재) 내용은 정당한 결정이다.

Ⅳ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
1. 관계법령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3조

2. 판 단

가.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- 청구인은 2014.10.20.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, 피청구인은 2014.10.28.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.

나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함에 대한 판단

1) 먼저 처분의 근거 및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‘정보’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 되어 있고,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2)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·부당함에 대한 판단

가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·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,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(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),

나) 피청구인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는바,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,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.

V. 결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.